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9.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19.9.10.
- 다. 상정일자: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9.24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박창열】

가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의결한 ‘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’ 권고안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2) 적용범위(안 제3조)
- 3) 위탁 대상사무 및 사전 검토사항(안 제4조)
- 4) 구의회 동의, 보고 및 동의안의 내용(안 제5조~제6조)

- 5)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, 제척·기피·회피사유 및 해촉(안 제7조~제9조)
- 6) 수탁기관 선정기준, 선정절차 및 이의신청(안 제10조~제12조)
- 7) 위·수탁협약서 내용 및 위탁기간(안 제13조)
- 8)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사용료 징수 등(안 제16조~제17조)
- 9) 지도·점검·감사 및 위탁의 취소(안 제18조~제19조)
- 10) 사무편람 작성·비치 및 승인(안 제20조)
- 11) 성과평가 및 결과 공개(안 제21조)
- 12) 재계약·재위탁 기한 및 기준(안 제22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

공적 부분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행정과 연계된 ‘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’ 권고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코자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,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우선, 대상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등 위탁 사전 적정성의 세부 기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, 효율성, 전문지식의 활용성, 운영의 투명성 등을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,

○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안 제5조에 별도 조문으로 규정·정비함은 물론,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동의 대상을 연간 구비 1억 원 이상으로 규정한 기존 조문을 모든

위탁사업에 대해 동의를 구할 것으로 개정하는 등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.

- 또한,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안 제11조제3항에 신설하고,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안 제12조에 포함하여 민간위탁 시 부패요소의 사전예방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, 사후관리 강화의 방안으로 안 제21조에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.
- 현대의 행정은 행정수요가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고 있으며, 지역문제 해결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욕구가 강해지는 등 행정과 민간의 협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민간위탁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. 2019년 9월 현재 마포구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총 154건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.
- 이번 민간위탁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,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그 동안의 민간위탁이 ‘사전 적정성 확보,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·공정성 제고,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담보 등’의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이번 개정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: 없음

【 관련 법령 】

「지방자치법」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